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결손보전을 위한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 근거 마련〉  
■ 이정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7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결손보전을 위한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 근거 마련 ..... | 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3.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 우편·예금·보험사업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 지원체계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체국예금과 달리 우체국보험은 우편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음. 이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간 여유재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은 이러한 전출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편사업 경영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는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체국보험도 우정사업의 근간 사업인 우편사업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체국보험은 2002년 제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기금 출연 의무에 따라 2004년부터 국가기관으로서 공적자금의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출연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이 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안정적인

보편적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의 결손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결손보전을 위한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 근거 마련

###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등).

[illegible]

|                   |                                                                                                                                                                                                                                                                              |
|-------------------|------------------------------------------------------------------------------------------------------------------------------------------------------------------------------------------------------------------------------------------------------------------------------|
| <p>③ · ④ (생략)</p> | <p><u>에도 불구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익이 생긴 회계의 이익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

## 나. 검토사항

### ☐ 결손보전을 위한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 근거 마련

- 우정사업은 우편사업,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의 3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각 특별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공통경비 분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입 및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이익금을 통한 특별회계 상호간 결손보전 등 보완적 요소도 갖추고 있음.

- 결손보전의 경우 우편물량 감소, 높은 경직성 비용, 경쟁 심화 등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우편사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거의 매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sup>1)</sup>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당기 손익금 범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해왔으며,<sup>2)</sup>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다른 특별회계와 상호간 결손보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런데, 전자고지 확대에 의한 통상우편 물량 감소<sup>3)</sup> 및 편의점 택배 성장 등에 따른 소포사업 정체<sup>4)</sup> 등이 지속되면서 향후 우편사업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별정우체국 연금자산 고갈이 임박함(2027년 예상)<sup>5)</sup>에 따라 추가적으로 우편사업 적자가 가중될 우려도 있음.
- 결국, 향후 우편사업 적자가 추가 확대되어 우체국예금의 당기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출할 수 있다.

2) 결손보전 추이(억 원): ('12)△466 → ('16)△507 → ('21)△1,253 → ('24)△1,177 → ('25)△1,242

3) 전자고지(만 건, KISA): ('18년) 148 → ('20) 4,151 → ('24) 21,000('18년 대비 142배)

4) 소포 성장률(%): ('19) 13.8 → ('20) 2.3 → ('21) 6.7 → ('22) 1.9 → ('23) △7.2 → ('24) 1.1 → ('25) △5.6

5) <별정우체국 연금 재정추계>

| (단위: 억 원) | '24년  | '25년 <sup>주1)</sup> | '26년 <sup>e</sup> | '27년 <sup>e</sup> | '28년 <sup>e</sup> | '29년 <sup>e</sup> | '30년 <sup>e</sup> |
|-----------|-------|---------------------|-------------------|-------------------|-------------------|-------------------|-------------------|
| 연금수지      | △373  | △419                | △504              | △558              | △614              | △685              | △768              |
| 사업수지      | 30    | 3                   | 45                | 1                 | △5                | △7                | △16               |
| 재정수지      | △343  | △416                | △459              | △557              | △619              | △692              | △784              |
| 자산규모      | 1,050 | 634                 | 175               | -                 | -                 | -                 | -                 |

주1) '25년도 이후 수치는 '2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단기전망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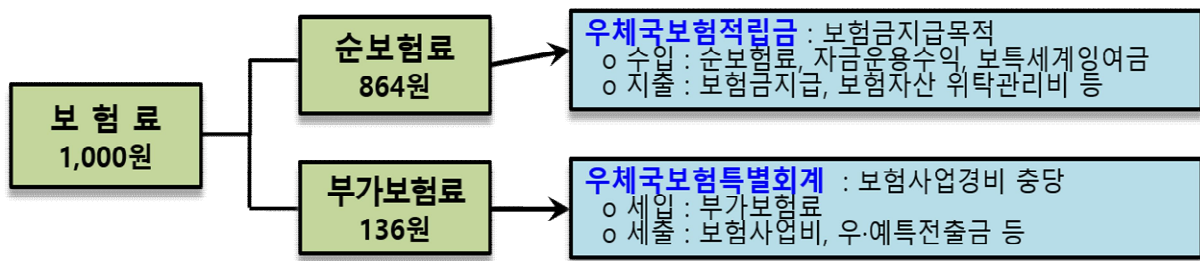
※ '25년도 이후 연도말 자산규모는 전년도 자산에서 당해연도 재정수지 적자 총당을 가감(유동성·비유동성(보유 부동산은 장부가로 반영) 자산 미구분

자료: 우정사업본부

손익 범위에서 결손을 보전할 수 없게 되면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체국보험도 우체국예금과 함께 우편사업의 결손보전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우체국보험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면, 우체국보험이 고객에게 수취하는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순보험료와 사업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지며, 각각 순보험료로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그리고 부가보험료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조성함.<sup>6)</sup>

#### < 보험료 구성 및 조성재원 >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2.

- 우체국보험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용하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집행되어 왔으며, 2004년부터

####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현재까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sup>7)</sup> 보험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의 1천분의 1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 2025년 기준 310억원, '04~'25년간 총 4,991억원을 출연함

### < 연도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규모 >

(단위 : 억원)

| 연도 | '04~<br>'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소계     | '26~<br>'27e | 계      |
|----|-------------|-----|-----|-----|-----|-----|-----|-----|-----|-----|-------|-------|-------|-------|-------|-------|--------|--------------|--------|
| 예금 | 2,418       | 445 | 561 | 598 | 594 | 576 | 585 | 590 | 608 | 676 | 740   | 767   | 769   | 798   | 820   | 851   | 12,397 | 1,817        | 14,214 |
| 보험 | 924         | 215 | 205 | 231 | 257 | 254 | 257 | 261 | 273 | 285 | 294   | 301   | 306   | 309   | 309   | 310   | 4,991  | 749          | 5,740  |
| 계  | 3,342       | 660 | 766 | 829 | 851 | 830 | 842 | 851 | 881 | 961 | 1,034 | 1,068 | 1,075 | 1,107 | 1,129 | 1,161 | 17,388 | 2,566        | 19,954 |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2.

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매년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②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하며,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가. 보험회사가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다음의 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1)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이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결산기 말 이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3)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4)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나.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입보험료(특별기여금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한 수입보험료로 한정되, 직전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입한 수입보험료를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그런데,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몰에 따라<sup>8)</sup> 2027년 이후 출연의  
무가 종료되면서 기금에 출연하던 금액만큼 유휴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개정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것과 동일한 규모를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회계의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존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범위 내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안정성 훼손 우려를  
줄였고,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우편사업 지원을 통해 전체  
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8조제2항 단서는 결손보전 지원의 대상으로 우  
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우편사업특별회계와 달리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결  
손 보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또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손 보  
전을 지원하지 않는데 보험에서만 예금을 지원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임.

8) 법률 제6804호(2002.12.2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연도별 우편 및 예금 경영수지 및 당기손익>

(단위 : 억원)

| 구분   |    | '11년   |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경영수지 | 우편 | △439   |     | △1,450 | △1,115 | △1,239 | 559*   | 708*  | △1,572 | △1,659 | △3,116 |
|      | 예금 | 1,637  |     | 2,233  | 2,950  | 3,913  | 16,260 | 349   | 2,093  | 2,399  | 7,078  |
| 당기손익 | 우편 | △1,254 |     | △1,297 | △316   | △1,253 | 983    | 1,198 | △1,177 | △1,242 | △3,365 |
|      | 예금 | 1,263  |     | 1,649  | 2,393  | 3,133  | 15,755 | △166  | 1,435  | 1,837  | 5,787  |

\* 우편사업 '21~'22년은 선거우편, 요금인상(50원), 우편-금융간 공통비 배분 합리화로 일시적 흑자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2.

- 따라서 개정의 실효성과 회계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안정성 침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결손보전 대상에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 제8조제2항 단서는 “이익이 생긴 회계의 이익금” 중 전년도에 적립한 책임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금액을 다른 회계의 결손 보전을 위하여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당기 이익금을 지원 재원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함께 우체국보험적립금이 조성되어 있고, 우체국보험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sup>9)</sup> 매 회계연도마다 우체국보험적립금이

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填)하

포함된 통합 결산서도 작성하고 있음.

- 그로 인해 개정안의 표현은 우체국보험적립금이 포함된 통합 결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보임.

#### <보험회계 결산서 및 적립금 포함 통합결산서 당기순이익 비교>

(단위 : 억 원)

| 구분             | 2022회계연도 | 2023회계연도 | 2024회계연도 |
|----------------|----------|----------|----------|
|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 1,549    | 1,574    | 392      |
| 통합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 △2,949   | 3,655    | 1,627    |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2.

-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성격을 가진 자금으로, 다른 회계의 결손보전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결손보전 재원으로 “이익이 생긴 회계의 잉여금”을 제8조제2항 본문에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을 규정한 것과 같은 표현인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으로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향후 우편사업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경우, 우체국예금의 결손보전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전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sup>10)</sup>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27년

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0) '24년 경영수지 1,627억원 흑자 달성, '24년말까지 우체국보험적립금에 우체국보험 통합결산서(재무제표) 상 이익잉여금을 통해 총 4.1조원 축적

말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몰 시 발생할 유휴재원을 통해 우편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임.

- 다만, 우편사업과 달리 예금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원을 전출할 수 있는 대상을 우편사업특별회계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 결손보전 전출 재원은 보험사업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가보험료로 조성된 사업비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출 재원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임을 명확히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235 |